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의 종류

알선(당사자간 자리를 주선 후 합의 유도), **중재**(중재 수용을 합의한 경우 인과관계 등 판단), **조정**(사실조사 후 조정안 작성, 합의 수락권고), **재정**(인과관계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결정·재판에 준하는 절차)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위원회별 업무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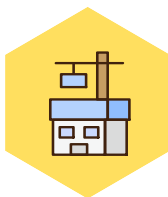
1. 신청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재정/중재
2.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알선/조정/재정/중재
3. 건축으로 인한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조정 (소음·진동 등의 환경피해요인과 복합된 경우에 한함)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개 시·도

1. 관할구역 내 신청금액이 1억 이하 재정/중재 (일조/통풍/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중재 제외)
2. 관할구역 내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알선·조정

조정의 대상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을 원인으로 건강재산(건물, 가축, 농작물 등)·정신적 피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 건강 피해



공공장 소음, 진동에 의한
가축, 어류 피해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



도로교통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기타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물, 재산, 정신적 피해 등

조정절차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 접수
및 심사관 지정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조정회의

신청의 종류(알선, 조정, 재정, 중재)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후 중앙(지방)위원회에 접수하면 담당심사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사실조사, 전문가평가가 진행되며 조정 위원들이 조정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법정처리기간 3~9개월)

☎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044-201-7969

홈페이지 <http://ecc.me.go.kr>